

제3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20. ~ 7. 24.(5일간)

<2026. 7. 20.(월) 10:00 제1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목 차

(의안번호 순)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페이지
1	10-1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김종욱 의원 등 8인	1
2	10-2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3	10-3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오산시장 (건축과)	4
4	10-4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건강증진과)	10
5	10-5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영 의원 등 5인	14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김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0-1호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중욱·정운영·조미선
유종대·박창선·김상미
권혁만·김민희 의원(8인)

□ 제안이유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6명 → 7인 이내)
-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6인 이내 → 7인 이내)

□ 검토의견

- 2026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경기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2026. 5. 6. 시행)하여 오산시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의 의원정수가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위원 정수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중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0-2호
------------	--------

발의년월일 : 2026. 7. 10.

발 의 의 원 : 김중욱 · 정운영 · 조미선
유종대 · 박창선 · 김상미
권혁만 · 김민희 의원(8인)

☐ 제안이유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안 제2조제1항)
 - 기존 6인 이내 → 7인 이내

☐ 검토의견

- 생략 (안건번호 10-1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동일함)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10-3호
----------	--------

제출년월일 : 2026. 7. 10.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및 “취약 거주시설” 정의 (안 제2조)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적용범위 설정 (안 제4조)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 규정 (안 제7조)
-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참고 1)에 참여함으로써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르면,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5조)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제7조) 및 위원회 설치(제8조) 등과 같은 실체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적용범위)** 다만,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있어 제2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 ‘동일한 지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유사한 지원’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은 점, ▲과거에 동일(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경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제외대상¹⁾과 상충하는 것으로 문언적 해석되는 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 이 경우, 경기도는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위원회 대행)** 조례안 제8조에서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산시 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2항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오산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함)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법제처 2013. 3. 16. 의견제시 13-0081²⁾ 참조)
- 우선, **건축위원회**는 ①건축법과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건축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③건축 민원에 관한 사항, ④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³⁾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에서는 건축물을

2) 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3)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집수리 지원심의위원회”라 함)는 ①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②공사 범위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으로 설치하려는 자문 기관으로서,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거나,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상위의 개념으로서 집수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오히려,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경우 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②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③보조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바, 집수리 지원심의위원회와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비록, 지원대상이 일부 상이하다 할지라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4)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2.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 공동주택지원금심사위원회가 집수리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2026년 도내 25개 시·군 254개소(단독 132호, 공동 122개소)의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우리시 또한 2027년도 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음.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노 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의 중복 또는 혼동을 방지하고 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적용범위 및 위원회 대행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4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u>제외하여야 한다</u> .	제4조(적용범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u>제외할 수 있다</u> .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 <u>오산시 건축 조례</u> 」에 따른 <u>오산 시 건축위원회</u> 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u>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u> 」 <u>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공 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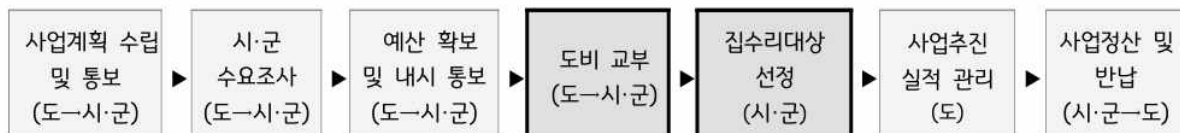
참고 1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5. 1. 1. 시행)
 - *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통합 일원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25년 사업대상 지역 확대)
- (대상주택) 노후한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25년 사업대상 유형 확대)
 - *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사업내용) 집수리(지붕·외벽·단열·방수공사 등), 경관개선(담장, 대문 등), 부대시설(가로등, 놀이터, 옹벽 등) 공사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600만원(도 30% 시·군 70%) 한도
 - 유형별 최대지원금 : 단독주택(12백만원), 공동주택(전유부 5백만원, 공용부 16백만원)
 - 자부담 : 10%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



□ '26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25개 시 254개소*(단독 132호, 공동 122개소) 지원
 - * 수원28, 용인13, 고양2, 부천13, 남양주5, 안산10, 평택10, 안양28, 시흥27, 파주5, 김포13, 의정부6, 광주5, 하남3, 광명8, 군포7, 안성33, 구리7, 의왕8, 포천6, 양평3, 여주2, 동두천6, 가평3, 연천3
- (사업비) 33.6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노후 주택 진단 및 시공방법 제시 등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추진

(출처) 2026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경기도, 2026. 4.)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4
----------	-------

제출년월일 : 2026. 7. 10.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그 전문성·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안 제6조의2)
 - 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제1항)
 - 위원회의 기능 규정 (안 제6조의2 제2항)
 -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안 제6조의2 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그 전문성·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

- (위원회 대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은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관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는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근거 자문기관과의 통합·운영이 제한됨. 다만,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근거 자문기관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근거 자문기관에 조례근거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5) 참조)
- 본 조례안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는 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자살예방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시켜서 심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 4. (생략)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또한, 「자살예방법」 제13조⁶⁾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

6)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2025. 12. 3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의 유사성이 있어 보이며, 현재 16개 광역 시·도 중 5개 시·도*에서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5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위원회(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자문기관인 위원회(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0-5호
----------	--------

발의년월일 : 2026. 7. 16.

발 의 의 원 : 정윤영·김종욱·유종대
김상미·김민희 의원(5인)

□ 제안이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오산시 공공 부문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융합 및 행정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과 대외협력으로 오산시 미래도시 구상 및 신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함
- 이에 따라 행정혁신 및 글로벌 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와 국가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계 행정 실증 모델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위탁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 효율화와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 시행계획 작성시 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 포함 신설(안 제5조제2항 제8호)
-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의 사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5조의3)

□ 검토의견

- 도시 경쟁력의 무게추가 AI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들은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보고,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AI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음.
- 오산시 역시 「AI 반도체 소부장 기반 자족형 미래산업 육성」을 민선9기 10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교3지구에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에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AI 연계 행정 실증모델 발굴과 확산에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오산시의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체감형 AI 공공서비스 설계·도입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